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32호 2025. 7. 14.(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5-31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예 천



1. 규칙명 :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2. 개정이유

「예천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2024.08.22. 시행)됨에 따라,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공기업 지출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리자의 직무위임에 관한 기준 금액 상향 조정(안 제3조)

- 당초 :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 기타 50만원 이하
- 개정 :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와 5,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및 물건매입, 기타 3,000만원 이하

나. 예산의 집행품의에 관한 기준 금액 상향 조정(안 제28조)

- 당초 : 추정금액 500만원
- 개정 :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5,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및 물건매입, 그 외 3,000만원 이하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salvador9237@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맑은물사업소

3) 팩스 : 054-650-63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맑은물사업소(전화 : 054-650-6378)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50만원 이하일 때”를 “3,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와 추정금액 5,000만원 이하인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000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 9.>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 ----- ----- ----- -----
1. ~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3.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5,000만원 이하인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일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 ----- -----
1.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000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생략)	2. (현행과 같음)